

함께 지키는 사이버 예절

사이버폭력(Cyber-bullying),
방관하는 사람도 가해자입니다.



아동권리보장원

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

사이버폭력

(Cyber-bullying)이란?

사이버공간에서
특정인을 집단적으로
따돌리거나
욕설, 헐담 따위로
괴롭히는 행위 등을
말합니다.

...#\$%&*@!!!

* [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(제2조)]

이런 상황은

사이버폭력을 의심해야합니다!

- ✓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체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초대되고 있다.
- ✓ 채팅방에서 모욕, 조롱, 폭언 등 공격하는 행위뿐 아니라 한꺼번에 채팅방을 나가 특정대상만 남겨둔다.
- ✓ SNS 상태메시지나 개인계정에 누군가를 특정하여 저격하거나 공격하는 글을 게시한다.
- ✓ 피해대상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파일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여 피해대상에게 대한 공격을 유도한다.
- ✓ 1:1 대화를 하더라도 욕설과 폭언 등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.

사이버상 괴롭힘도 학교폭력예방법으로
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

사이버예절, 손끝에서 마음이 이어집니다.

- 나와 상관없는 채팅방이나 게시글에 불필요한 댓글을 쓰지 않습니다.
-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고
피해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줍니다.
만약 방관하고 묵인한다면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글이나 영상으로 소통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

ONLINE

온라인도 우리가
함께하는 공간입니다.
서로가 존중하고 위로받는
건강한 곳으로 만들 수
있습니다.



특정 앱이나 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
요구하거나 위협이 있을 경우,
그리고 사이버폭력 상황을 알게 됐을 경우
부모님, 선생님께 알리고 신고하도록 합니다.

사이버폭력 신고

- 국번없이 **117**
- 스마트폰앱 **117CHAT**
- 문자 **#0117**

